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고용노동 뉴스레터

'2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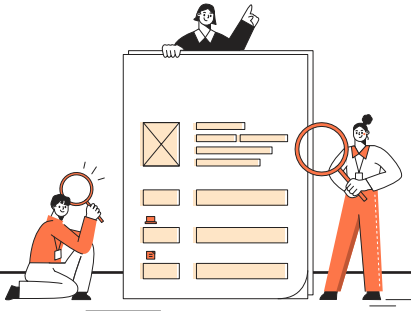
코트라 투자종합상담실 고용노동부 파견관 **조선열** 서기관



- 법 개정 등으로 '2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과 제도 안내
- ① 현장의 실효성을 높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개정, 3.2. 시행)
②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2.1. 시행 ③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
④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도 개선 ⑤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장 모집(2/24~8/11)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고용노동 뉴스레터

최신 고용노동정책 및 지원 제도



1. 현장의 실효성을 높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개정, 3.2.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개정하고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①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구체성 미흡 ②교육 이수 기준 불명확 ③법령개정 미반영 등

①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명확화(제3조2 등)

- 먼저 개정된 고시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근로자가 실제 작업할 때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이에 따라 교육내용도 변경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했다.

② 모바일·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교육형태 인정(제3조2, 제5조, 제6조 등)

- 그간의 집합교육은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휴대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과 화상회의(예: Zoom, Webex 등)를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③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 확대 등(제9조)

- 종전에는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해서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직무교육과 별도로 이수토록 하여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제9조제7항)하거나 사내 강사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제9조제8항)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
- 또한,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지원·지도 시 함께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제9조제13항)하여,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찾아낸 사업장의 위험성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집중력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고용노동 뉴스레터

최신 고용노동정책 및 지원 제도

④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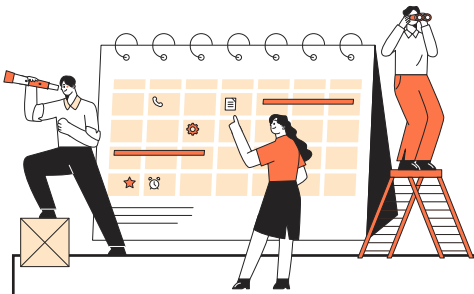
- 그간 사업장 내 **자체교육 강사**는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 등 일정 자격을 가진 자 외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 **외부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 개정 고시에서는 자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추가했다. 기업의 **안전경영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가 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 ①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 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⑤ 인터넷 원격교육의 기술적 기준 완화 및 평가기준 강화

- 종전에는 **인터넷 원격교육**과 관련한 규정에서 교육내용과는 무관한 **기술적인 기준을 지나치게 세세히 규정**하고, **평가방법과 이수기준**은 사업장과 교육기관의 **자율에 맡겨** 인터넷 원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 이에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대폭 완화**하고, **교육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여 인터넷 원격교육의 교육효과 향상에 집중했다.
- 특히, 평가방법을 **학습평가, 과제평가, 진도율 평가**로 세분화하고, 학습내용 및 진도율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되 과제평가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학습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의 평가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고용노동 뉴스레터

최신 고용노동정책 및 지원 제도

〈인터넷 원격교육의 기준 개정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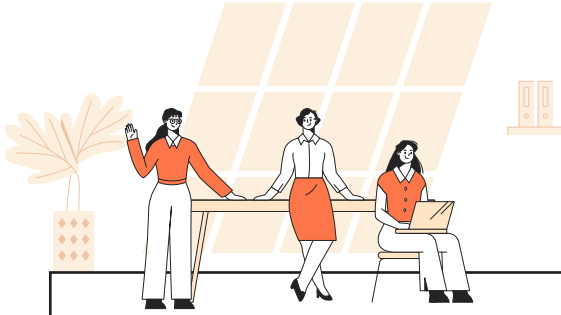
	개정 전	개정 후
기술적 기준	무정전전원장치,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세부적인 기술적 기준은 삭제하고, ①네트워크, ②방화벽, ③홈페이지 항목으로 간소화
평가 기준	평가 방법, 이수 기준 등 자율로 규정	① 평가방법은 학습평가, 과제평가, 진도율평가로 세분화하고, 학습평가와 진도율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과제평가도 할 수 있도록 규정 ② 학습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고 기회는 3회로 제한. 다만, 과목을 재학습하는 경우 시험 기회를 3회 재부여 등 ③ 평가 이수기준을 70% 이상으로 규정 (예시: 총 100점인 경우 70점 이상)

⑥ 직무교육과정 개설 시 사전 승인제 폐지 등(제18조)

- 이 밖에도 안전보건관계자 등에게 실시하는 **직무교육 과정을 개설하거나 폐지할 때** 직무교육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였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간의 주요 질의회시 등을 담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개정된 고시 내용과 교육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고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

▲교육 안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고용노동 뉴스레터

최신 고용노동정책 및 지원 제도

2.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2.1. 시행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1.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①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장
 ②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기준” 사업주 ※ 건설업 제외
 - (지원금액) 개별휴게시설 최대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 최대 1억원 등
 - (지원대상 품목) 휴게시설 및 휴게시설비품·설비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052-703-0648)
-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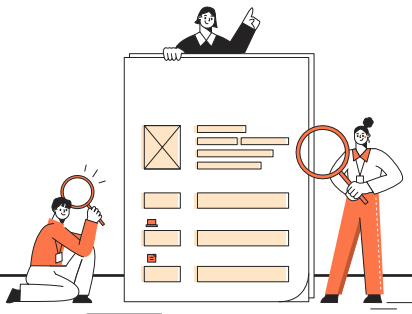
3.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3.2.부터)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장기근속을 통해 초기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에게 지급
- 지원대상
 -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 제조업 및 건설업 한정
- 지원수준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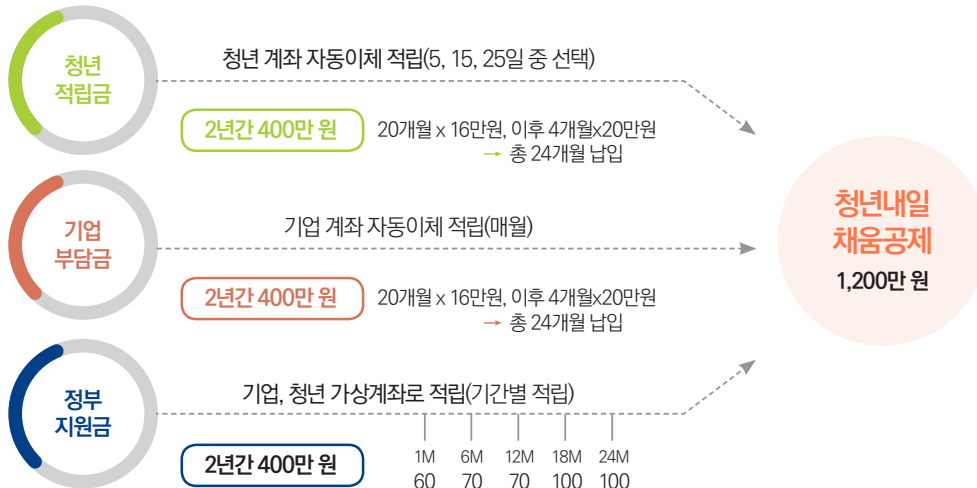
만기공제금	청년적립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1,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고용노동 뉴스레터

최신 고용노동정책 및 지원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가입 신청

○ 청년·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신청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는 2023년 2월 15일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과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 그간에는, 화학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을 위탁하는 자가 화학제품을 기획 및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나 비공개 심사 신청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에게만 허용되었다.
- 이로 인해, 위탁자는 수탁자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제품의 전성분 등 영업비밀을 공개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탁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의 전성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고용노동 뉴스레터

최신 고용노동정책 및 지원 제도

5.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장 모집

- 노사발전재단은 기업의 '일'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노사가 함께 근로 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 (신청기간) 2023.02.24.(금) ~ 2023.08.11.(금)

구분	임금체계구축 패키지	일반컨설팅, 통합패키지형, 이행컨설팅, 컨소시엄형, 노동전환				
		2차	3차	4차	5차	6차
접수일정	2.24 ~ 4.10	2.24 ~ 3.24	2.24 ~ 3.24	4.28 ~ 6.2	6.3 ~ 7.10	7.11 ~ 8.11
결과발표	5.12	4.25	5.31	7.6	8.8	9.13
비고	컨설팅 희망영역 신청에 제한은 없으나, 희망영역이 4개 이상일 경우 최대 3개 영역으로 조정하여 컨설팅 진행			최대 2개 영역 컨설팅 진행		최대 1개 영역 컨설팅 진행

* 1차 접수는 마감되었으며, 2023년 2차부터 모집함

- (지원비용) 전액 무료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은 자부담금 발생
- (지원영역) 임금체계개선, 평가체계개선, 안전한 일터 구축 등 희망분야 선택
- (지원방식) 수행기관 소속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신청방식)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사업 신청」 버튼 클릭
- (문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187, 1027)